



산업안전보건법 ^{*}전부 개/정/안/내

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**법의 보호대상**을 확대하고, **유해·위험작업 도급**을 금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부를 개정합니다.



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바꿉니다!

보호대상

근로자 → 노무를 제공하는 자



법의 보호대상이 확대 됩니다

-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이 **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 종사자**까지 확대되었고,
- 앞으로 새로운 노동관계를 고려하여 **보호대상을 확대**해 나갈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.



유해·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이 금지 됩니다!

- 도급작업, 수은·납·카드뮴의 제련·주입·가공·가열작업, 허가대상물질을 제조·사용하는 작업의 사내 **도급**이 금지됩니다.

* 단, 아래의 경우에는 **예외적으로 사내 도급을 허용**

- ① 일시·간헐적인 작업 ② 하청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원청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
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

- 급성 독성,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**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**을 받아야 합니다.



고용노동부

산업재해예방

안전보건공단



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바뀝니다!



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이 강화 됩니다!

- 원청이 안전·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**장소의 범위**를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·제공한 장소 중 원청이 지배·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**확대**됩니다.
- 원청이 안전·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준이 **3년 이하의 징역** 또는 **3천만원 이하의 벌금**으로 상향되고,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**7년 이하의 징역** 또는 **1억원 이하의 벌금**으로 상향됩니다.



사업주의 처벌수준이 강화 됩니다!

- 사업주가 5년 내에 두 번 이상 안전·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 **형의 1/2까지 가중**하도록 하였고 법인에 대한 **벌금형의 상한이 10억원으로 상향**됩니다.
- 안전·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**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**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.



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!
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**발주자**로 하여금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**안전보건대장**을 작성토록 하고, 설계·시공 단계에서는 안전보건대장의 **이행** 등을 **확인**토록 하였습니다.
- 건설공사 도급인에게서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·기구 등이 설치·해체·작동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·보건조치를 하도록 하며, **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업을 등록제**로 하고, 사업주는 등록된 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·해체 작업을 맡겨야 합니다.



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!

- 기업이 **영업비밀**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 하기 위해서는 **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**를 받아야 하며,
-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**대체명칭**과 **대체함유량**은 기재하여야 합니다.



기타 신설 및 개선 사항
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**대표이사**에게 **매년 안전·보건계획**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, **위험성 평가** 시 **노동자를 참여**시켜야 합니다.
- 정부 책무의 하나로 직장 내 **괴롭힘 예방**을 위한 **조치기준** 마련 및 지도·지원을 추가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됩니다.

법령 시행
시기

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법률은 2020. 1. 16.부터 시행됩니다.

[예외] • **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정** : 2021. 1. 16.부터 시행

• **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규정** : 2021. 1. 1.부터 시행